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74
------	-----

2023.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4.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 및 ‘재난상황관리과’ (4급) 신설

- ‘재난상황관리과’ (4급)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 및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지원과’ → ‘재난안전예방과’ 로 재편

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

- 한강르네상스 2.0 핵심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수상사업부’ 기능 강화
- 그 밖에 「아동복지법」 개정(’ 20.10.)으로 아동학대조사 권한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지자체(자치구)로 이관되어 ‘아동복지센터’ 의 소관사무 현행화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총괄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 및 재편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나.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정 운영 방향을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로 제시하고,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함 (2022년 8월).
- 이후 집중호우(2022.8.8.~8.9)와 이태원 참사(2022.10.29) 등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인 ‘한강르네상스 2.0’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함.
- 이로 인해 서울시 조직체계는 6실 4본부 11국 15관·1단 161과·담당관에서 6실 4본부 11국 15관·1단 162과·담당관으로 개편됨 (+1과 △1반).

< 서울시 조직체계 개편 내역 >

< 현 행 >



< 개 편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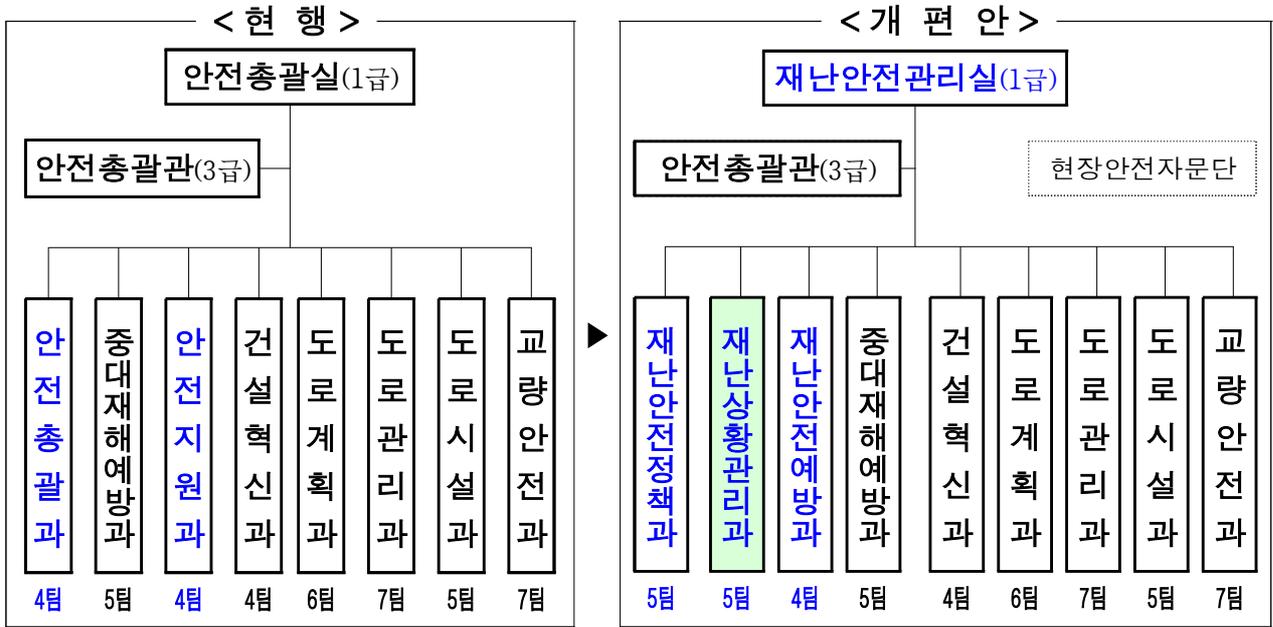


- 또한, 정원은 그대로 두고 중간직급인 5·6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 (피라미드형→항아리형)으로 직급체계를 구축해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재난대응 총괄기능 강화(안 제4조, 안 제15조)

- 서울시는 ▶ ‘안전총괄실’ (1급)의 기관명칭을 ‘재난안전관리실’ (1급)로 변경하고, ▶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하며, ▶ ‘안전총괄과’ 와 ‘안전지원과’ 를 ‘재난안전정책과’ 와 ‘재난안전예방과’ 로 각각 개편하여 재난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민간전문가로 현장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재난대응 컨설팅을 실시해 재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실’ 은 1실·1관·8과·42팀에서 ‘재난안전관리실’ 1실·1관·9과·48팀(+1과, +6팀)으로 확대됨.



- 신설되는 ‘재난상황관리과’는 ‘안전총괄과’에서 수행하던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고(재난상황팀→상황총괄팀), 상시적인 재난상황 전과·접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관리팀 4개(5급 소방령)를 신설할 예정이다.

< 재난상황관리과 소관 팀별 현황 >

구분	기능	팀장	비고
상황총괄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 재난현장지휘 버스운영 등	행정5급	이관 (재난상황팀)
상황관리 1팀~4팀	재난상황 접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소방령 (5급)	신설

-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산재된 재난수습 기능을 일원화하고 신속한 재난 구호·복구 기능을 강화하게 됨.

< 재난안전정책과 소관 팀별 현황 >

구분	기능	비고
안전총괄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운영 지원, 더안전회의 등 현안회의 운영 등	
안전정책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정책 개발, 도시위험성 종합평가 등	
재난대응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개선, 모의상황 조치훈련 등 실질적 훈련 시행	
재난수습팀	재난 시 구호·복구 지원 총괄, 재난관리자원 비축·운영	신설
안전감찰팀	市·區 재난관리체계 평가 등 재난예방·이행실태 상시 점검·감시	신설

- ‘안전지원과’ 는 ‘재난안전예방과’ 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여 재난 예방 기능에 집중할 계획임.

< 재난안전예방과 소관 팀별 현황 >

구분	기능	비고
재난예방팀	폭염·한파 종합대책 시행,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 총괄 등	안전지원팀 (명칭변경)
인파관리팀	축제·행사 현황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생활안전팀	재난예방 정책 및 대시민 교육, 안전보안관 운영 등 생활 안전 모니터링	사회안전팀 (명칭변경)
지진관리팀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진안전센터 운영 및 지도·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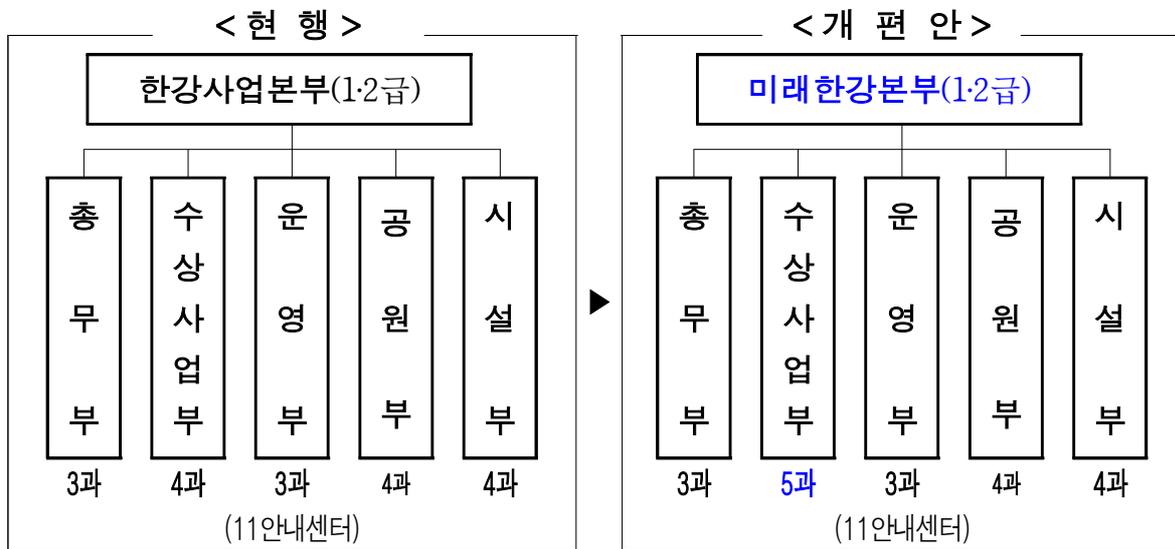
- 우리 사회는 과거 고도압축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과거형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재난과 감염병, 환경오염 등 미래형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은 기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시 인력(5급 관리자)을 배치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정책과’에 신설된 재난수습팀·안전감찰팀은 타 부서의 사업을 이관한 것에 불과해 한층 더 고차원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명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음.
-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 및 복구가 중요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인 신고·접수, 수습의 기능만 강화되어 있고, ‘재난안전예방과’는 기능 강화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함.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안전전문단 운영으로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나, 공식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어느 정도 행정상의 구속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임.
- 한편, 기관의 명칭을 부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야 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실은 재난대응기능에만 집중하여 기관의 고유 기능인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한강사업본부 조직 및 기능 강화(안 제60조)

- 서울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이로 인해 한강사업본부는 1본부 5부 18과에서 미래한강본부 1본부 5부 19과(+1과)로 확대됨.



- 지난 3월에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전략별 10대 과제와 55개의 사업을 제시함.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

비전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4대 핵심전략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10대 전략	자연성 회복 자연친화적 환경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	감성조망명소 문화예술공간 축제·행사	성장거점 강화연계 주거지 혁신

- 이 중 ‘한강사업본부’는 20개의 사업을 담당하며, 한강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한강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서해벚길 복원과 서울항(여의도) 조성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수상사업부에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4과→5과).
 -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서해벚길 사업 등 신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상기획과’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함.
 - 현행 ‘수상기획과’의 수상 시설물 운영·관리 기능을 신설한 ‘수상운영과’로 이관하여 전담 추진함.

< 한강사업본부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담당 현황 >

10대 전략 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이동성 확장	한강술래길 운영	총무부
문화예술공간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독섬 자벌레)	총무부
행사	차 없는 잠수교 두박두박축제	총무부
행사	한강사계절축제 「2023한강페스티벌」	총무부
감성조망명소	전망카페 활성화	운영부
행사	한강 흥프로젝트	운영부
한강연결	암사초록길 등 한강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	시설부
수상산책	선유도 보행잔교	시설부
감성조망명소	자전거도로 감성조망명소	시설부
이동성 확장	서해벚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	수상사업부
이동성 확장	한강아트피어	수상사업부
이동성 확장	서울수상레포츨센터	수상사업부
이동성 확장	수상관광콜택시 활성화	수상사업부
자연성 회복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	공원부
자연성 회복	자연형 호안	공원부
자연환경친화	한강숲 조성	공원부
자연환경친화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공원부
자연환경친화	자연형 캠핑장 조성	공원부
자연환경친화	여의샛강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공원부
감성조망명소	지천합류부 놀빛광장	공원부

- ‘한강사업본부’ 에서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 당연하나, 5급 부서 신설(수상운영과)과 신규사업 담당인력 보강(수상기획과)만으로 가능한지 미지수임.
- 한편, 2007년 ‘한강사업본부’ (당시 3부 9과, 12개 지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5부 18과 11개 안내센터)까지 시민에게 잘 안착되어 인식되고 있음.
-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미래” 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추가해 이미 정착된 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3) 소관 사무의 현행화 등(안 제69조, 안 제132조)

- 법률과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 등 서울 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일부 소관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u>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u> 2. (생략) 3. <u>아동학대 행위자의 가정조사, 상담, 교육</u> 4. ~ 8. (생략)	제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u>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u> 2. (현행과 같음) 3. <u>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 검사 및 가정환경조사</u> 4. ~ 8. (현행과 같음)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2020.10).
-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2조)
- 이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4, 보건복지부·경찰청)이 수립되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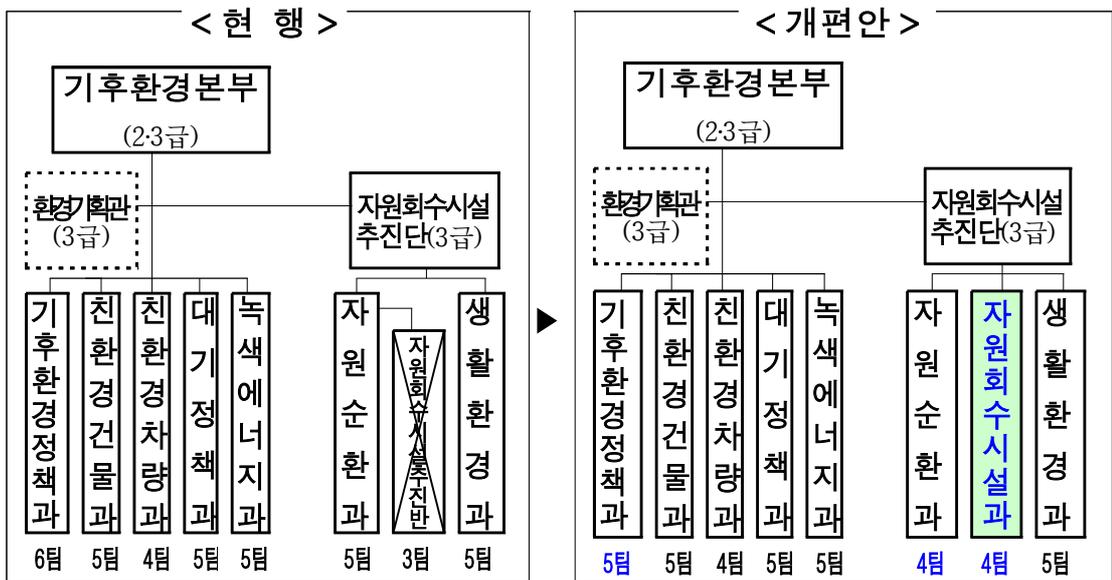
<공동업무수행지침 중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시·도 (아동학대담당부서)	·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라. 그 외 조직개편 사항(시행규칙 사항)

(1) 기후환경본부 개편

-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본부의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격상하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국제협력팀)과 교육(환경교육팀) 기능을 통합함(국제협력교육팀 신설).
- 이로 인해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관 1단 7과 1반에서 1본부 1관 1단 8과으로 확대됨(+1과 △1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나,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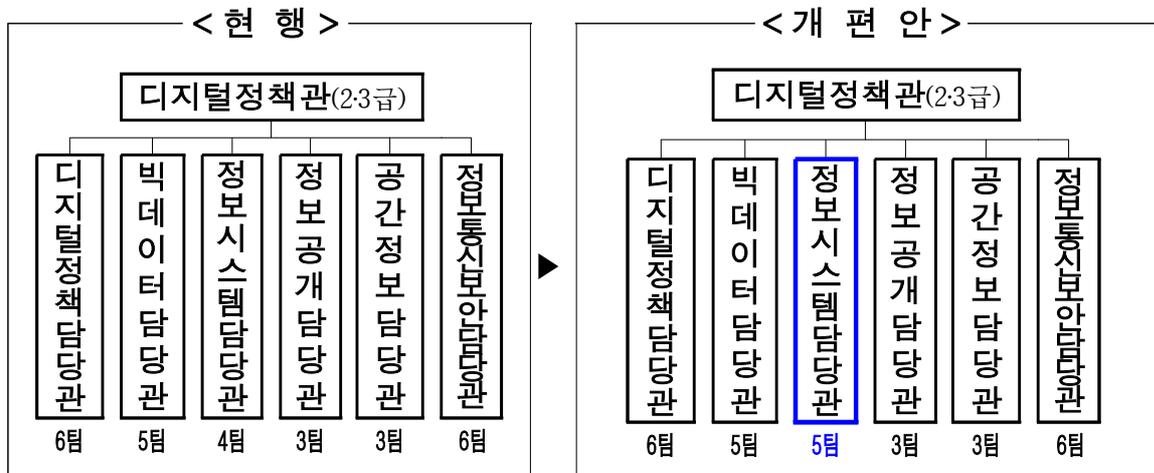
<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개요 >

- 후 보 지 :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일대(상암동)
- 시설규모 : 1,000톤/일(부지면적 21,000㎡)
- 소요예산 : 8,458억원
(국비 30% 포함 / 자원회수시설 7,177억, 주민편익시설 1,281억)
- 건립방향 : 시설 지하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시설로 조성
- 향후계획 : `22. 9. ~ `23. 6. 입지결정(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입지 발표)
`23. 3. ~ `24. 12. 사전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공사 발주)
`24. 12. ~ `26. 공사 시행(착공 및 준공)

- 특히, 향후 입지결정 고시 등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공정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담 조직의 확대와 격상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임.
- 또한, ‘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과 교육 간의 기능 통합은 정원의 증원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기능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함.

(2) 디지털정책관 개편

- 서울시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4급)에 ‘인공지능 행정팀(5급)을 신설함[1관 6담당관 27팀 ⇨ 1관 6담당관 28팀(+1팀)].



-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 (MAU)가 1억명을 넘는 등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부는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 역시 대시민 행정서비스, 내부 행정혁신 분야 등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기능이 요구됨.
- 다만, 시정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목적이 전시성 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3) 과소팀 정비

- 서울시는 정원 3명 이하의 규모이면서 실제 근무인력 역시 3명 이하인 과소팀들을 업무중요도, 팀장 통솔범위, 조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대상으로 선정함.
- 정비계획에 따라 선정된 팀은 모두 5개이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의 팀으로 통합 또는 업무 이관으로 폐지될 예정임.

< 과소팀 정비 계획 >

대상	정비내용
(민방위담당관) 동원계획팀 폐지 민군협력팀 폐지	- 관·군 협력사업, 병무업무 등 군 관련 업무, 비상대비 업무 일원화 위해 팀 통폐합 ▶ 동원계획팀(폐지) → 비상대비팀으로 통폐합 ▶ 민군협력팀(폐지) → 비상기획팀, 병무관리팀으로 업무 이관
(청년사업반) 청년공간사업팀 폐지	- 현재 청년 공간의 기능·역할에 대한 재구조화 진행 중('21.10.~)으로, 기존 공간 통·폐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청년공간 신규조성 사업수요가 많지 않음 ▶ 청년공간운영팀으로 통폐합
(스마트건강과) 건강환경지원팀 폐지	- 구강보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영유아 건강검진 등 국비 사업으로 자치구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업무 성격이 유사한 타 팀으로 통폐합 ▶ 구강보건·건강검진 사업 → 가족건강팀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 건강생활팀
(공원조성과) 공원구역관리팀 폐지	- 유관업무인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련 정책 수립·추진과 부지 사용 계약·정비 등 관리업무 일원화 ▶ 공원구역정책팀으로 통합

- 독립된 팀으로 존속될 만큼 업무의 양과 중요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인력 정비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의견

- 서울시의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중 개정안에서는 ‘안전총괄실’ 개편과 ‘재난상황관리과’ 신설, ‘한강사업본부’의 명칭 변경 및 조직 보강을 담고 있음.
 -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의 격상, ‘인공지능행정팀’ 신설, 5개의 과소팀 정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해당됨.
- 개정안 중 ‘재난안전관리실’로의 기관명칭 변경과 ‘재난상황관리과’ 신설 등은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재난상황관리과’ 신설과 ‘재난안전정책과’ 및 ‘재난안전예방과’ 개편 등은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조직개편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의 주된 효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근무 인력(6급 이하 2명)에 관리자급(5급 1명)을 추가한 것임.
 - ‘재난안전정책과’와 ‘재난안전예방과’ 개편은 기존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분야별로(수습·구호·복구/전과 및 접수/예방) 재구조화한 것에 불과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라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미래한강본부’ 로의 명칭 변경은 ‘한강사업본부’ 에 익숙한 일반시민의 혼란과 행정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고, 서해갯길 복원 등 ‘한강르네상스 2.0’ 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직과 인력 보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조직개편안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역점 시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는 정원의 증원 없이 부분적인 부서 간 기능과 인력 조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증원을 고려치 않는 경직된 조직개편의 기초에서 벗어나 행정수요가 시급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되, 기능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감축해 조직 개편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여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4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 및 ‘재난상황관리과’(4급) 신설

- ‘재난상황관리과’(4급)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 및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지원과’ → ‘재난안전예방과’로 재편

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

- 한강르네상스 2.0 핵심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수상사업부’ 기능 강화
- 그 밖에 「아동복지법」 개정('20.10.)으로 아동학대조사 권한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지자체(자치구)로 이관되어 ‘아동복지센터’의 소관사무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3. 3. 23. ~ 3. 27.) 결과: 총 1건(반영)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기획경제전문위원회실-801(2023.3.27.)호)

기획조정실의 분장 규정 중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 시유재산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획조정실에서 현재처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됨**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재난 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제4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다.

제6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
3. 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제132조제6호 중 “제30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1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

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생활환경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치수안전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한강사업본부장 귀하”를 “미래한강본부장 귀하”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및제7호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u>안전총괄실</u>,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p> <p>③ (생략)</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재난안전관리실</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u>안전총괄실</u>) <u>안전총괄실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신설></p> <p>1. <u>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3. (생략)</p> <p>4. ~ 8. (생략)</p>	<p>제15조(<u>재난안전관리실</u>) <u>재난안전관리실장</u>-----.</p> <p>1. <u>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u></p> <p>2. <u>재난</u> ----- --</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
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
보

7. ~ 17. (생략)

6. -----

----- 같은
법 제30조제4항-----
--

7. ~ 1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